

<h1 style="margin: 0;">보도자료</h1> <p style="margin: 0;">2013. 12. 23.</p>	 <h2 style="margin: 0;">대 법 원</h2> <p style="margin: 0;">Supreme Court of Korea</p>	
	담당부서	양형위원회
	담당자	운영지원단장 강동혁 (☎ 3480-1924)
	공보관실 ☎ 3480-1451	

##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양형위원회는 2013. 12. 23. 16:00 대법원에서 제5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배임수증재/변호사법위반/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 ⇒ 향후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3. 3.경 양형기준 최종의결 예정
  - ※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경과를 지켜본 후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함
  
- 양형기준 설정의 의의
  - 배임수증재 범죄 : 타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공정성과 성실성을 보호법적으로 하는 민간부분의 부패범죄
  - 변호사법위반 범죄 :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법조브로커 활동 등 사법질서의 근간인 변호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 공무원 취급 사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행위 등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부패범죄
  -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으로, 기존의 뇌물범죄, 금융범죄 양형기준과 더불어 부패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완결
  - 성매매범죄  
 최근 기업형 성매매알선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범위한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며,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 성매매알선을 비롯한 성매매범죄에 관하여 객관적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6. 19.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기준을 마련

### ① 배임수증재 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 유형 분류
  - 수재액 또는 증재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세분하여 금액이 다액일수록 높은 형량 범위 권고
- 주요 특징
  - 법원의 양형 실무를 반영함과 아울러 특히 배임수재의 경우 수재액이 큰 구간에서는 규범적 조정을 하여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배임수재 유형에서는, 1)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2)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가중처벌 하되,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을 반환한 경우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함

### ② 변호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동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2항),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동법 제110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동법 제111조)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로 대유형을 분류하고, 대유형 내에서는 수수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세분하여 수수액이 다액일수록 높은 형량범위 권고
  - 특히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동법 제110조) 행위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판사나 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 또는 교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에게서 돈을 받는, 사법신뢰를 크게 해하는 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유형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 처벌
- 주요 특징
  - 법원의 양형 실무를 반영함과 아울러 규범적 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량범위 설정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유형에서는, 1)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하되,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지인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돕기 위해 실제 비용 정도만 받고 범행에 이른 경우 등)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함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유형에서는, 1)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내용까지 적시하면서 범행한 경우 등), 2)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 형태의 범행인 경우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함

### ③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 ○ 양형기준 설정범위 및 유형 분류

#### - 19세 이상 대상 범죄, 19세 미만 대상 범죄로 대분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19세 이상 대상 범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9세 미만 대상 범죄)이 성매매 주체 및 대상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음 ⇨ 법률의 적용대상(성판매자)을 기준으로 유형을 크게 나누고, 다시 행위유형에 따라 성매수, 성판매강요, 성매매알선 등으로 중분류

-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 성매매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로서, 징역형의 형량분포 범위가 좁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

#### ○ 주요 특징

-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6. 19.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여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범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엄정한 처벌기준을 마련

#### ■ 성매수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성매수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 성판매강요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강요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2	대가수수등 성판매 강요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 성매매알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유인·권유 / 영업 성매수 유인·권유·강요 / 장소·정보 제공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영업 성판매 유인·권유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3	업으로 성매매 알선 / 업으로 장소·정보 제공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에 대하여도 법원의 양형 실무를 반영함과 아울러  
규범적 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량범위 설정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어 가중처벌되는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행위(모든 성매매범죄  
유형에 반영)
  - 피해자(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모든 성판매강요 유형 및 19세 미만 대상 성매수 유형에 반영)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모  
든 성매매알선 유형에 반영)

4] 향후 일정

- 2013. 12. 26. ~ 2014. 1. 26.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 양형기  
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 ※ 다음 회의는 **2014. 1. 20.(월)** 개최 예정  
⇒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  
기준안 의결 예정
- 2014. 2. 17.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당일 14시)

- 2014. 3.경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의결
  -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의결 경과에 따라 공청회 개최와 양형기준 최종의결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

# I. 배임수증재 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 1.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

### 1. 배임수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4	1억 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 2. 배임증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0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2년

## 2. 주요 특징

- 법원의 양형 실무를 반영함과 아울러 특히 배임수재의 경우 수재액이 큰 구간에서는 규범적 조정을 하여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 법정형 : 배임수재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배임증재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배임수재의 경우 1)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2)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가중처벌 하되,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을 반환한 경우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함

- 배임증재의 경우 적극적으로 증재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중요 양형요소로 고려

## II. 변호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 1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

####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4월	2월 - 8월	6월 - 1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4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6월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2년6월 - 5년
5	1억 원 이상	2년 - 4년	3년 - 6년	4년 - 7년

####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4	1억 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 2 주요 특징

- 법원의 양형 실무를 반영함과 아울러 규범적 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엄정한 처

별이 가능하도록 형량범위 설정

※ 법정형 :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변호사법 제110조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유형에서는, 1)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하되,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지인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돕기 위해 실제 비용 정도만 받고 범행에 이른 경우 등)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함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유형에서는, 1)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내용까지 적시하면서 범행한 경우,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영향력 행사를 통해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 2)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 행위 등에 대하여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함

### III.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 1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

#####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판매강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강요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 성판매 강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 나. 성매매알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영업·대가수수 등 성매매 알선	- 8월	6월 - 1년4월	1년 - 3년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매수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성매수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 나. 성판매강요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강요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2	대가수수등 성판매 강요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 다. 성매매알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유인·권유 / 영업 성매수 유인·권유·강요 / 장소·정보 제공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영업 성판매 유인·권유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3	업으로 성매매 알선 / 업으로 장소·정보 제공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 성매수 유인·권유·강요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 ② 양형기준 적용대상 성매매범죄 적용법조 및 법정형

법률	유형 등	적용 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성매매 처벌법	성판매 강요	§18 ①	1호 - 폭력, 협박 2호 - 위계 등으로 곤경에 빠뜨려 3호 - 보호감독 지위 이용	10년↓, 1억↓
		§18 ②	1호 - 대가 수수(요구 약속 포함) ①항 범행 2호 - 위계·위력 청소년, 심신미약자, 장애인 대상 3호 - 범죄단체 등에 의한 ①항 범행	1년↑
	성매매 알선	§19 ①	1호 - 성매매알선 등 2호 - 성판매인 모집 3호 - 성판매 직업 소개·알선	3년↓, 3천↓
		§19 ②	1호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2호 - 성판매인 모집 후 대가 수령 3호 - 성판매 직업 소개·알선 후 대가 지급	7년↓, 7천↓
아청법	성매수 (종전§10)	§13 ①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1년-10년, 2천-5천 (직전 5년↓, 3천↓)
	성판매 강요 (종전§11)	§14 ①	1호 - 폭행, 협박 2호 - 선불금 등 채무 이용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위력 3호 - 보호감독 지위 이용 4호 - 영업으로 성매매 유인·권유	5년↑ (3년↑)
		§14 ②	대가 수수(요구 약속 포함) ①항 1 ~ 3호 행위	7년↑ (5년↑)
		§14 ③	성판매 유인·권유(본인 매수의사 없는 경우)	7년↓, 5천↓ (5년↓, 3천↓)
	성매매 알선 (종전§12)	§15 ①	1호 - 업으로 성매매 장소 제공 2호 - 업으로 성매매 알선, 정보통신망 알선정보 제공 3호 - 1, 2호 사실 알며 자금·토지·건물 제공 4호 - 영업 성매매업소에 고용하도록 한 자	7년↑ (5년↑)
		§15 ②	1호 - 영업으로 성매수 유인, 권유, 강요 2호 - 장소 제공 3호 - 성매매 알선, 정보통신망 알선정보 제공 4호 - 2, 3호 행위의 약속	7년↓, 5천↓ (5년↓, 3천↓)
		§15 ③	성매수 유인, 권유, 강요	5년↓, 3천↓ (3년↓, 2천↓)

※ 2013. 6. 19. 개정 전 아동법의 종전 규정 및 법정형은 괄호에 부기

※ 아동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3항은 범조문상 성판매강요 유형의 범죄들과 같이 위치해 있으나 그 실질은 성매매알선임 ⇨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성매매알선 제2유형, 제14조 제3항은 성매매알선 제1유형으로 포섭함

### 3 주요 특징

- 2013. 6. 19.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의 법정형을 아래와 같이 대폭 상향 ⇨ 상향된 법정형에 따라 형량범위를 규범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성매수 :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 ⇨ 징역 1년 ~ 10년, 벌금 2천만 원 ~ 5천만 원
  - 성판매강요 유형
    - 1유형 해당 범죄(14조 1항) : 징역 3년 이상 ⇨ 징역 5년 이상
    - 2유형 해당 범죄(14조 2항) : 징역 5년 이상 ⇨ 징역 7년 이상
  - 성매매알선 유형
    - 1유형 해당 범죄(14조 3항, 15조 2항) :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 ⇨ 징역 7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
    - 2유형 해당 범죄(14조 1항 4호) : 징역 3년 이상 ⇨ 징역 5년 이상
    - 3유형 해당 범죄(15조 1항) : 징역 5년 이상 ⇨ 징역 7년 이상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에 대하여도 법원의 양형 실무를 반영함과 아울러 규범적 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량범위 설정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어 가중처벌되는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행위(모든 성매매범죄유형에 반영)
  - 피해자(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모든 성판매강요 유형 및 19세 미만 대상 성매수 유형에 반영)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모든 성매매알선 유형에 반영)

## IV. 향후 일정

- 2013. 12. 26. ~ 2014. 1. 26.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 ※ 다음 회의는 2014. 1. 20.(월) 개최 예정
    - ⇒ 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안<sup>1)</sup> 의결 예정
- 2014. 2. 17.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당일 14시)
- 2014. 3.경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 최종의결 예정
-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의결 경과에 따라 공청회 개최와 양형기준 최종의결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

---

1) 2013. 4. 5.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취유인 범죄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됨으로써 기존의 일부 구성요건이 삭제되고 새로운 구성요건이 신설됨 ⇨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